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of a BPO

채진익* Jin-Ik Chae

목 차

- | | |
|------------------------|------------------------|
| I. 서론 | IV. BPO 제도상의 금융지원과 시사점 |
| II. BPO의 제도적 의의와 그 유용성 | V. 결 론 |
| III.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현황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BPO의 제도적 운용과 금융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BPO는 시스템화, 지급확약, 비즈니스의 효율성 개선, 위험완화,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이점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제체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용에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적·전자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따라서 BPO는 전통적인 금융무역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발전·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SWIFT 및 ICC 등의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제어> 전자무역, 금융무역결제, BPO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저자

I. 서론

오늘날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무역에도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다. 즉, 종이기반의 전통적인 무역시스템으로부터 전자무역시스템으로 획기적인 발전에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SWIFT에서는 오픈 어카운트 기반의 TSU(Trade Service Utility)로부터 출발하여 BPO(Bank Payment Obligation: 은행지급약정)가 출현되었으며,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제도적 차원에서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직 그 시행 초기단계여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WIFT의 TSU는 원칙적으로 전자적 운용기반의 오픈 어카운트 방식을 위해 고안되었고, 또 이를 위한 매칭 및 워크플로우(matching and workflow)솔루션이며, BPO는 이에 은행지급약정을 추가한 무역금융결제 솔루션이다(채진익, 2011). BPO는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에서 수익자가 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제시를 조건으로 대금결제가 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TMA의 베이스라인(baseline)에 일치하는 데이터 셋의 제시를 조건으로 무역결제가 이행된다(Hennah, 2012).

BPO는 2013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검토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발전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제도적 발전·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노력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중한 많은 선행연구¹⁾에도 불구하고 BPO의 정확한 이해와 그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내외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발표에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BPO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그 발전·정착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발표 자료와 더불어 SWIFT 및 ICC(국제상업회의소) 등의 자료,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1) 국내 선행연구에는 BPO의 제도적 소개, 특성 및 운용시스템, URBPO, 그리고 그 계보학적 연구 등의 연구로 여기에는 이봉수(2016), 이상진·김형철(2015), 송경숙·채훈(2016), 임재욱(2014), 채진익(2011, 2013, 2015), 한나현(2013) 등의 연구가 있다.

II. BPO의 제도적 의의와 그 유용성

1. BPO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SWIFT에서는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은행이 무역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전자적 기반의 새로운 무역결제 방법으로써 은행의 지급확약을 제공하는 BPO를 고안하였다(BAFT, EBA, FCI, ICC and ITFA, 2016). BPO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기존의 TSU(오픈 어카운트)에 은행의 지급약정을 추가한 무역결제방식이다(채진익, 2011).

BPO는 규모, 지역 및 산업에 관계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무역거래를 보호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BPO는 신용장, 선지급 또는 오픈 어카운트와 같은 지급결제방식과 유사하지만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약과 전자 메시징 및 그 매칭시스템을 통합한다(SWIFT.COM, 2016).

BPO는 무역거래 데이터의 성공적인 매칭을 조건으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은행들 간의 지급수단이다. BPO는 URBPO(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BPO 통일 규칙)에 따라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된 모든 데이터 셋이 제출되어 그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mismatch)가 수리되는 즉시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채무약정을 부담하기로 하는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의 독립적인 지급약정이다(ICC, 2013a; BAFT, et al., 2016).

즉, BPO는 무역거래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매치되거나 또는 모든 미스매치가 수리되면 지급된다(INNOPAY, 2015). 따라서 BPO는 TSU TMA 베이스라인상의 BPO 약정에 매치되는 조건으로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obligor bank)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다. 이는 BPO가 TSU의 베이스라인과 선적 후에 제시되는 데이터의 매칭을 조건으로 그 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Marchal, 2010). 그리고 BPO는 ICC의 URBPO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 메시징 표준(ISO 20022)은 물론 URBPO를 준수해야 한다(Madhavan, 2013; 채진익, 201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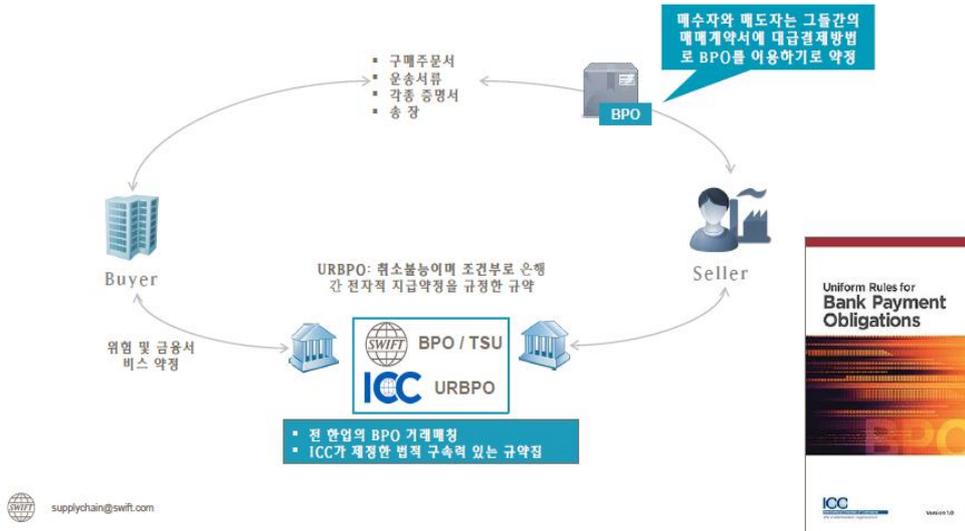
BPO는 은행의 지급약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매커니즘은 전통적인 신용장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무역방식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 결제방식이 구분되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결제방식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고 거래조건의 선택과 합의가 중요하다. 또 거래 절차상의 편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동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채진익, 2011, 2015).

따라서 BPO는 신용장의 지급약정은 물론 오픈 어카운트의 이점과 편리성을 제공

하는 종이 없는 전자무역결제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Goparaju, Meyer and Chiu, 2013; 채진익, 2013). BPO는 전자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신용장의 지급보장 기능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 신속성 및 편리성을 갖춘 대안으로 신용장제도의 번거로운 업무적 절차해결을 통하여 전 세계의 무역결제시스템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Susmus and Baslangic, 2015). 따라서 BPO는 지급약정, 위험완화, 금융담보로 이용 등 그 기능이 있는 무역금융결제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다(ICC BPO E·G, 2016).

<그림 1> 무역결제의 대안으로의 BPO

BPO는 무역결제를 위한 강력한 대안



자료 : SWIFT

2. BPO의 제도적 유용성

BPO는 성공적인 전자매칭을 전제로 약정일자에 대금지급이 이행되는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으로, 지급확약을 제공하고, 모든 당사자의 위험을 완화시키며, 또한 금융을 위한 담보로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BPO는 무역결제를 위한 지급수단이다(ICC BPO E·G, 2016). 신용장의 조건부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유사하게 BPO는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에 근거하여 일람불 또는 연지급으로 개설된다. 전자매칭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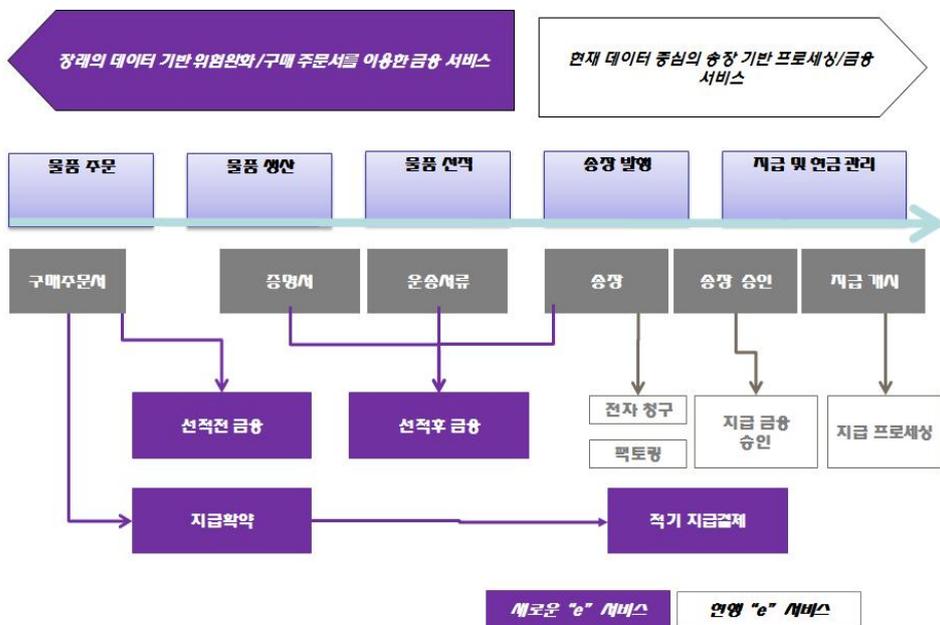
상에서 무역거래 데이터의 매칭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BPO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이 발효된다(ICC BPO E·G, 2016).

BPO는 물리적 서류가 아닌 전자제시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용장방식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다(채진익, 2014). 즉 BPO는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지급확약으로 신용장을 통해 확보되는 비즈니스의 편익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프로세스와 전자매칭에 이르기까지 일관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으로 오픈 어카운트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ICC 701E).

BPO는 전자적 데이터 관리를 통한 서류작업(관리)의 단순화, 거래기간의 단축, 데이터 매칭의 자동화를 통한 신속성 및 불일치 축소, 또한 그 불일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실수(과실) 위험성의 감소, 실시간 가시성을 통한 전자매칭이 성립된 후 적기 지급, 프로세스의 시스템적 간소화로 제도적 개선 및 신속한 추적관리, 그리고 BPO를 기반으로 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위한 금융 등을 제공한다(Harada, 2013).

그리고 BPO의 핵심 기능으로는 은행의 지급확약, TSU의 TMA를 통한 성공적인 데이터 매칭이 성립되면 대금지급 이행, 매수자의 신용위험과 자금의 불충분성 위험 및 지급

<그림 2> 위험완화/금융서비스



자료 : ICC

위험 등의 완화, 1차적인 지급의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원본 서류교환, URBPO의 적용 등이 있으며, 그리고 부가 서비스로는 매수자 측에서는 BPO를 기반으로 한 신용공여, 매도자 측에서는 BPO를 기반으로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Bills Bought: 매입환) 등이 있다(Harada, 2013).

3. BPO의 특징과 전통적 방식과 비교

BPO는 규모,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매수자와 공급자에게 그들의 무역거래를 보호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하는 새로운 무역결제 및 금융 솔루션이다. BPO는 종이 흐름을 제거하고 데이터 매칭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간의 개입(그리고 주관적 판단)을 대체함으로써 신용장보다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한다(SWIFT, 2016).

우선, BPO는 지급결제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거래은행을 통한 SCF(Supply Chain Finance: 금융공급체인) 솔루션의 지원수단(enabler)으로 수용된다. BPO는 선적 전후 모두에 SCF의 기회가 제공된다(BAFT, et al., 2016).

둘째, BPO는 매수자,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 매도자, 그리고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을 참여시키는 4-코너(corner) 모델을 이용한다. BPO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들은 파트너(partner) 또는 환거래은행으로서 서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benefits)을 제공한다(BAFT, et al., 2016).

셋째, 채무은행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으로부터 그의 역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조건부의 지급의무 및 우발채무(부외거래)를²⁾ 부담한다. 거래물품의 선적에 관한 데이터가 TMA에 제시되면, 유효한 데이터 셋 보고서(또는 미스매치의 경우에는 수리가 된 경우)에 따라 다음 3가지의 방법으로 결제된다. 우선, 일람불로 지급됨으로써 지급약정이 종료된다. 그리고 연지급 약정 또는 인수가 있으며, 이 경우는 직접적 채무이며 부내거래(on balance)로 단기 자금차입(unfunded)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할인이 가능한 연지급 약정 또는 인수이다. 이는 직접적 채무이며 부내거래 및 현금 아이템(여신/상환청구권 없는 선급)으로 자금이 지급된다(ICC BPO E·G, 2016).

넷째, BPO는 은행보증이나 보증신용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은행보증은 지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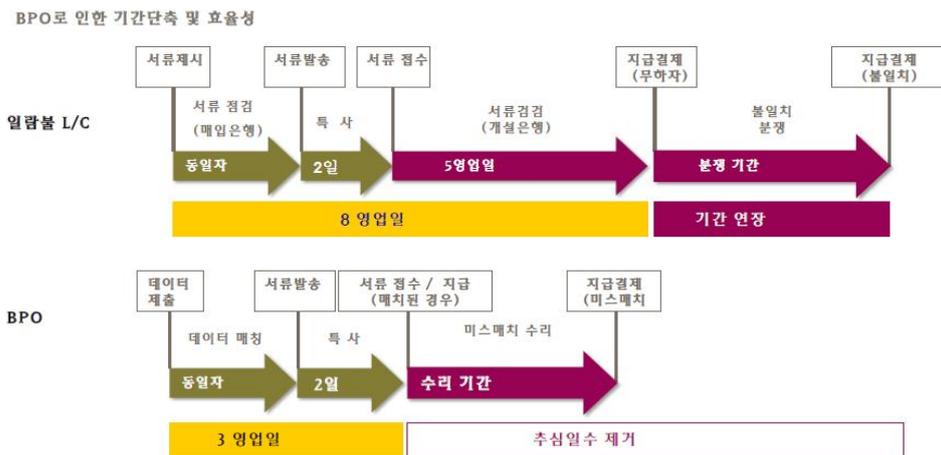
2) 여기에서 '우발채무'(부외거래)란 회계학적 용어로 불확정 채무라고도 하며,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확정채무(부내거래)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회계장부(재무상태표)에 기록되면 부내거래이며, 그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부외거래가 된다.

단이 아니고, 무역 사이클(cycle)의 일부도 아니며 자동결제 기능이 없다. 또한 은행보증을 국제거래에서 미지급,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함으로써 그 보증거래가 개시된다. 반면, BPO는 지급수단으로, 시스템적 자동결제 기능이 있으며, 일방의 당사자의 물품인도를 대가로 그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무역거래 사이클의 일부이다. 약정물품을 선적함으로써 그 거래가 개시되며, 성공적인 데이터 매칭이 성립되면 입증된다(ICC BPO E·G, 2016).

다섯째, BPO는 은행 간 약정이다. BPO는 그 채무은행이 지급거절의 위험을 부담한다. BPO는 은행 간 약정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확인과 동일한 형태로 “확인”될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한 지급조건은 은행과 고객의 약정으로 해결된다. 매도자 자신의 거래은행(항상 BPO의 수취은행)이 매도자에게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무수권 협약” 지급은행이 될 수 있다(ICC, 2012). 매도자에게 BPO의 확인은 BPO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취은행과 매도자 간의 개별 약정의 일부이다(ICC BPO E·G, 2016).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수취은행”(recipient bank)은 일반적으로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수익자를 의미하고 또한 신용장은 확인될 수 있다. 한편 BPO거래에서 “수취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에 해당되며,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자는 수익자에 해당되고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이나, BPO 거래에서 매도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ICC BPO E·G, 2016).

<그림 3> BPO의 효율성 개선



자료 : SWIFT

Ⅲ.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현황

1. BPO의 운용과 그 절차

BPO는 화환신용장에서와 같이 물리적 서류가 은행에 제시되는 대신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들의 은행에 전자적으로 제시하며, 표준 포맷 ISO 20022 TSMT(무역서비스관리)를 이용하여 TMA라는 특별한 목적의 플랫폼에 매치된다. 이는 참여은행과 그 TMA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전용으로 디자인된 XML표준이다. 그 매칭은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되며, 그 TMA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한된 은행만이 이들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TMA에 접속할 수 있다(BAFT, et al., 2016). BPO는 다음 3단계로 운용된다.

우선, 제1단계로 베이스라인의 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매수자는 구매주문서를 매도자에게 발송한다. 그리고 매수자는 최소한의 PO 데이터와 BPO 조건을 채무은행에게 제공한다. 매도자는 PO 데이터와 BPO의 조건을 수취은행에서 확인한다. 제출된 데이터가 TSU(TMA)에 매치되면, "베이스라인"이 설정된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그들의 은행으로부터 그 매칭 보고서를 수취한다(ICC BPO E-G, 2016).

제2단계는 데이터의 매칭 단계이다. 매도자는 TMA 상에 설정된 베이스라인과의 자동매칭을 위해 무역 데이터(데이터 셋)를 제출한다. 즉, 매도자는 약정물품을 선적한 후에 그의 거래은행에게 그 선적과 송장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의 거래은행은 다시 매칭을 위해 그 데이터를 TMA에 제출한다. TMA는 그 데이터를 대조하여 매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매치결과 보고서를 채무은행(매수자의 거래은행)에 발송한다. 매수자는 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매치 보고서를 수령한다(ICC BPO E-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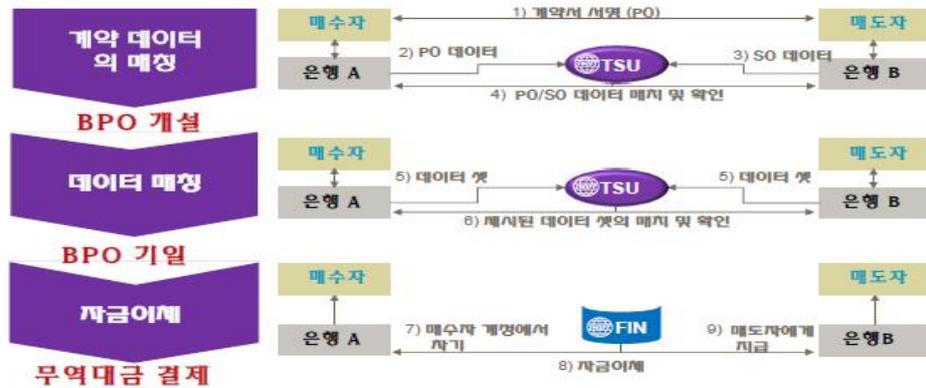
성공적으로 매칭(제로 미스매칭)이 되면, 그 BPO는 지급되며, 채무은행은 그 BPO 금액을 약정기일에 수취은행에 자동적으로 지급의무를 진다(BAFT, et al., 2016). 그러나 그 데이터 셋이 미스 매치(불일치)인 경우, 매수자의 거래은행은 권리포기를 위해 매수자와 교섭하거나 또는 매수자의 권리포기를 거절하고 지급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T. O. Lee Consultants Ltd, 2011). 그 미스매치가 승인 또는 수리되면, 그 BPO는 지급된다.

그리고 제3단계는 지급결제가 이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데이터 셋이 매치되거나 또는 미스매치가 수리된 경우로 BPO는 지급이 이행되며 약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기일이 도래되면, 그 채무은행은 그 대금을 매수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은행 앞으로 그 자금을 송금한다. 그 수취은행은 매도자의 계좌에 입금시

킨다(ICC BPO E·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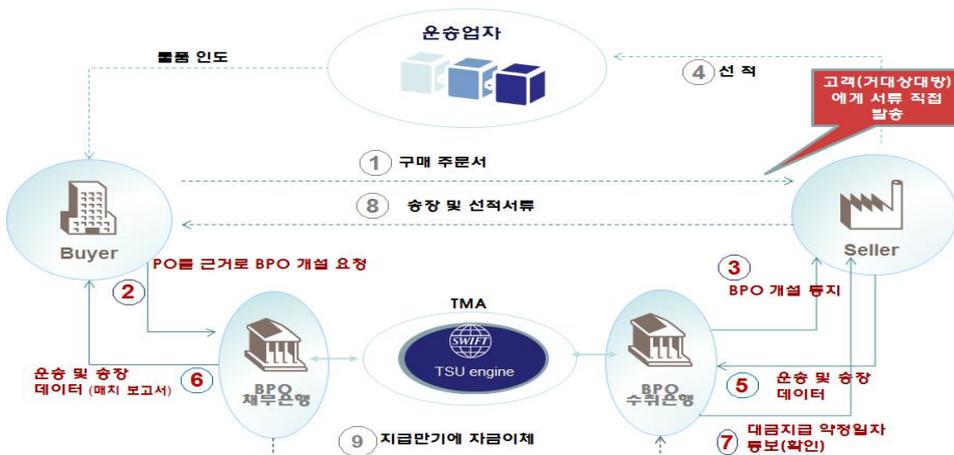
그 물리적인 서류의 흐름과 최종 대금지급은 기술적으로 BPO 범위를 벗어난다. BPO는 유동적인 지급조건을 제공한다. 예컨대 “매칭 즉시 지급”(“일람불”과 유사), 또는 구매주문서, 운송 데이터 또는 송장 데이터가 매칭된 후 일정일 경과한 후 지급(예컨대 “송장과 매칭 후 60일” 등) 등을 조건으로 약정한다(ICC BPO E·G, 2016).

<그림 4> BPO 거래주기



자료 : ICC

<그림 5> BPO 데이터, 서류 및 물품의 흐름



자료 : ICC

2. ISO 20022 표준과 베이스라인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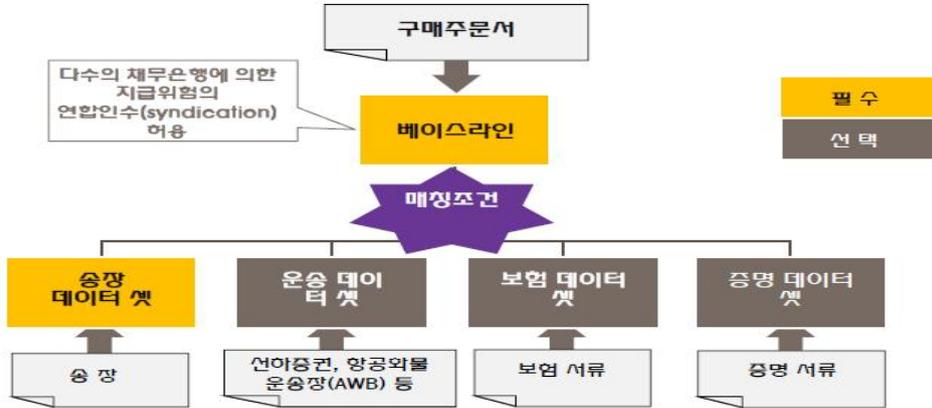
URBPO 제2조 c항에서 “URBPO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된 적법한 ISO 20022 무역서비스관리(Trade Services Management: TSMT) 메시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다른 형태의 메시지의 이용은 본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BPO에 적용되는 TSMT 메시지만이 이들 규칙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RBPO는 은행과 TMA 간 동일한 메시징표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Casterman, 2013).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BPO 거래의 첫 단계이며, 그 이후 모든 무역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합의된 데이터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데이터 셋의 매칭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BPO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로만 조건이 변경된다. 그 요구된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PO로부터 추출되어 베이스라인이 설정된다(BAFT, et al., 2016). 즉 베이스라인은 무역서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규합하여 매칭조건이 설정된다(Casterman, 2015).

그 베이스라인은 은행 간에만 설정될 수 있다. 그들 모든 은행 “동일한 메시징 플랫폼(TMA)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TMA를 통하여 구조화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매수자의 거래은행과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특정 거래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합의할 수 있다. 양 거래은행에서 최초로 제출한 ‘최초 베이스라인 제출’(Initial Baseline Submission)이 일치되면(데이터의 제시의 일치) 베이스라인이 설정된다. 그 베이스라인이 옵션인 BPO를 약정하고 있다면, 또한 BPO가 개설되며(ICC, 2013b), 그 BPO는 TMA를 통하여 개설된다(ICC, 2013a; 채진익, 2013b).

따라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BPO가 최종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매도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이 제시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를 규정해야 한다(ICC, 2013b; 채진익, 2015). 그 베이스라인은 초기에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즉 당사자, 구매 주문서,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데이터 셋(송장은 필수), 매칭조건, BPO(선택 사항) 등이다(ICC BPO E·G, 2016).

<그림 6> 베이스라인의 매칭조건 설정



자료 : ICC

3. BPO의 개설약정과 데이터 필드

1) BPO의 개설의뢰와 그 약정

BPO 개설의뢰인은 BPO 거래약정에 서명함으로써 은행은 기초 무역거래에 개입하지도 않고 또한 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ICC Guidelines, Sec. 2(c)). 그리고 BPO 거래약정에 따라 개설된 모든 BPO는 URBPO가 적용된다. 당해 개설의뢰인은 그의 상거래에 대한 URBPO의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2(d),(e)).

개설의뢰인이 은행에 BPO의 개설을 요청한다면, 그 개설의뢰인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된 때부터 또는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에 의하여 편입된 시점부터 그 채무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그 채무은행이 데이터의 매치 통보를 접수하거나,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그 개설의뢰인의 수리(승인) 통지를 접수하면, 그 개설의뢰인은 당해 BPO의 지급조건에 따라서, 또는 그 개설의뢰인과 은행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채무은행에 상환의무를 진다(ICC Guidelines, Sec.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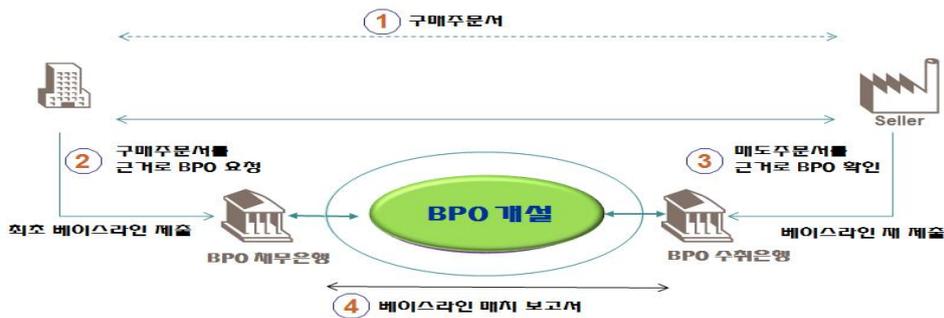
TSU 애플리케이션(TMA)이 미스매칭이 없는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를 발송하여 그 베이스라인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참여은행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BPO는 유효하게 개설되어, 구속·강제력 있는 유효한 약정을 구성한다. BPO를 포함한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구

매주문 지급약정에 해당함으로써 선적전 금융에 대한 지원신청의 근거로 이용된다(ICC BPO E·G, 2016).

이미 언급되었듯이 BPO는 처음부터 개설될 필요는 없다. 그 이후 베이스라인의 조건 변경으로 자유롭게 추가로 약정함으로써 매수자 자신의 신용한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급확약을 제공한다(ICC BPO E·G, 2016).

그리고 BPO의 조건변경은, 예컨대 BPO 금액이 변경할 경우에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그 이전의 금액은 새로운 금액으로 대체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 TMA가 그 매수자 거래은행의 조건변경에 대한 승인 메시지를 승인하는 때에 새로운 금액이 BPO 금액으로 유효하다(ICC BPO E·G, 2016).

<그림 7> 베이스라인의 설정 및 개설



자료 : ICC

2) BPO의 개설약정과 데이터 필드

매도자에게 지급보장을 약정해야 하는 매수자의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수자의 거래은행(및/또는 BPO 채무은행)은 BPO를 개설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및/또는 BPO 채무은행)은 그의 장부에 우발채무로 처리한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은 데이터 셋 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행된다. 그 지급방법은 베이스라인에 설정된 대로 일람불 또는 기한부일 것이다(ICC Guidelines, Appendix).

그러므로 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개설의뢰인의 신청서식을 고안해야 한다. 은행은 당해 개설의뢰인의 신청은 취소불능이라는 것과 그 은행이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 조건변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그 개설의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개설의뢰인의 승인이 포함되기를 원할 것이다(ICC Guidelines, Sec. 4(a)).

데이터 필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거래 참조번호, PO 번호, 매수자의 명칭과 국가, 매수자 거래은행의 은행 식별코드(BIC), 매도자의 명칭과 국가, 매도자의 거래은행의 은행 식별코드, 채무은행, 수취은행, 금액과 통화, 물품과 수량, 지급조건, 요구 데이터(상업송장, 운송, 보험, 증명서, 기타 증명서), 유효기일, 연락처, BPO 준거법, 수수료(charges)를 포함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4(a)).

BPO 거래약정서는 은행과 고객 간의 데이터의 전송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예컨대 본 데이터의 전송은 독립적인 은행 전자플랫폼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다거나(이 경우에 그 플랫폼의 이용조건은 조건변경 요청 가능), 또는 심지어 종이 형식(mode)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이 환경에서는 별도의 분명하고 간결한 가이드라인(guide)이 작성되거나, 또는 부록으로 추가될 수 있다(ICC Guidelines, Sec. 4(b)).

은행이 특정한 거래 또는 BPO에 참여하기로 그의 고객에게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의무가 없으며,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ICC Guidelines, Sec. 4(c)).

4. 무역 데이터의 제시와 매칭

1) 데이터의 유효성과 취급

은행과 거래고객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기밀 데이터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및/또는 그 기밀 데이터의 공개가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를 약정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거래고객에게 BPO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는 것 이외에도 기초 무역거래에 관련하여 제공된 고객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지를 약정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5(b)).

또한 URBPO 제12조(데이터의 유효성)에 따라야 하며, 참여은행이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URBPO 제9조(c)에 따른다. 즉, TMA에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초 무역거래의 관련 거래고객(매수자 또는 매도자)로부터 접수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ICC Guidelines, Sec. 5(c),(d)).

그리고 거래고객은 은행에 제출한 데이터가 그 기초 무역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 데이터 셋과 관련하여 그 선적서류에 명시된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고객은 은행이 데이터 대조를 위해 TMA에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지체 없이”에 대한 은행의 요구범위,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대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5(f),(g)).

무역거래 데이터는 매도자가 작성하고 제시한다. BPO 거래에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관련되는 데이터 요소는 이에 해당되는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로부터 추출되어 데이터 셋 형태로 TMA에 입력된다. 매도자는 그 데이터(또는 서류)를 매도자의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에 제출해야 한다(ICC, 2013b; 채진익, 2015).

2) 데이터의 전자매칭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는 URBPO의 조항에 따라서 전적으로 취급될 것이며, 그러한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는 그 시점에서 TMA에 적용되는 기능과 규약에 따른다. 은행이 거래고객에게 데이터의 미스매치 명세를 통지하는 경우, 당해 거래고객은 그 미스매치 통지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지시해야 한다. 당해 은행이 거래고객의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한 수리지시를 접수하거나 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은행은 TMA로부터 통지받은 데이터의 정확한 비교결과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BPO 관련 은행의 모든 약정은 그 BPO 조건 또는 당해 고객과 은행 간에 별도의 합의에 따른 금액과 기간에 제한된다(ICC Guidelines, Sec. 2(h),(i),(j)).

제시된 데이터 셋은 TMA에 입력되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된다. 데이터의 대조가 제로 미스매치(Zero Mismatch)이면 그 TMA는 제로 미스매치라는 취지의 데이터 셋 매치보고서를 작성한다. 매수자의 거래은행(또는 채무은행)은 이들 미스매치의 수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매수자의 거래은행이 그 미스매치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은행은 TMA에 미스매치 거절 메시지를 제출한다.

그 후에는 TMA(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는 미스매치 거절통지서를 발송한다. 미스매치는 미스매치 수리 메시지를 제출하여 수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TMA는 미스매치 승인 통지서와 베이스라인 보고서를 참여은행에 발송할 것이다. 본 베이스라인 보고서는 그 미스매치의 승인을 포함한다(ICC, 2013b; 채진익, 2015).

따라서 제출된 데이터 셋을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하여 그 데이터 셋이 성공적으로 매치되면, 그 BPO는 지급되어야 하며,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은 '4-코너' 모델 내에서 금융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BAFT, et al., 2016).

3) TMA의 운용

선택된 TMA는 은행 소유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아니며, URBPO 제1조(a)에 따라서, BPO 거래의 모든 참여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관해서는 동일한 TMA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참여은행은 TMA의 제공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에서 서비스의 실행은 적절한 시기에 그 TMA의 사정(가용성)에 따를 것이다. 은행은 그 별도의 계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거래시점에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TMA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은행의 입장에 대해서는 본 지침 제8조 제3(e)항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ICC Guidelines, Sec. 7(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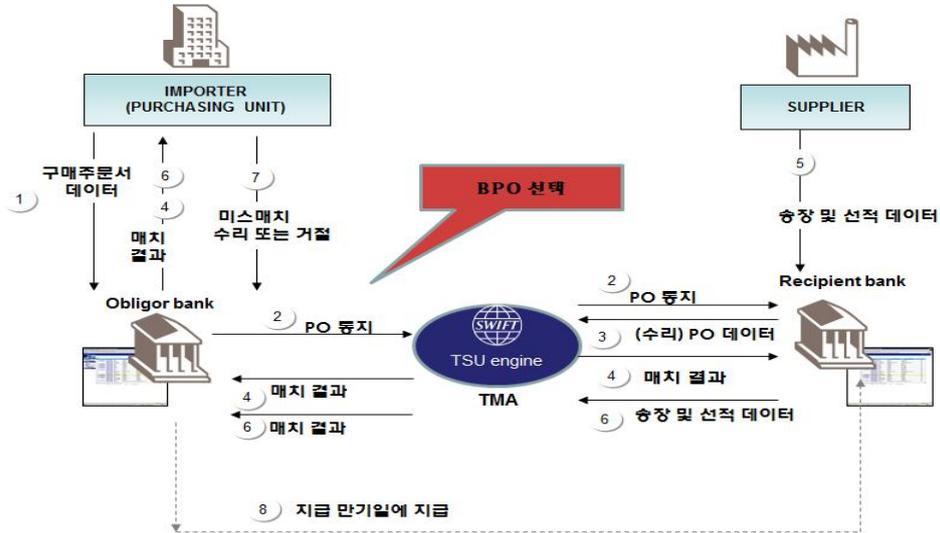
은행은 데이터의 송수신에 있어서 TMA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될 독립체로서 ‘제출은행’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은행을 이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출은행이 요청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 지침 제8조 제3(e)항에서 다루고 있다(ICC Guidelines, Sec. 7(d)).

은행은 거래고객이 제출한 데이터는 완전·정확하고 진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써 TMA로부터 접수한 데이터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매치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를 명시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 또는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는 베이스라인의 성공적인 설정 또는 데이터 셋 제출에 대한 데이터의 매치, 또는 두 베이스라인에서 또는 데이터 셋 제출에 있어서 유일하게 확인된 미스매치의 정확한 목록의 결정적인 증거로 신뢰할 권리가 있다(ICC Guidelines, Sec. 7(e)).

URBPO에 따라 은행은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거래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거래에서 거래고객의 역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ICC Guidelines, Sec. 7(f)).

그리고 은행과 거래고객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과 인증요건이 요구된다 (ICC Guidelines, Sec. 7(g)).

<그림 8> BPO 데이터 흐름



자료 : ICC

IV. BPO의 제도상의 금융지원과 시사점

1. BPO 금융지원과 약정

매수자와 매도자는 그들 각각의 거래은행(채무은행과 수취은행)과 BPO 거래의 프로세스를 위한 계약적 관계는 쌍방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약정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ICC는 2015년 8월에 'BPO 거래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을 발간했다(BAFT, et al., 2016). 매도자와 수취은행 간의 금융약정은 본 금융을 위한 계약적 근거가 될 것이며, 채무은행과 수취은행은 URBPO와 TMA 약정에 따라야 한다(BAFT, et al., 2016).

따라서 BPO 거래에서 무역금융은 BPO 그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거래당사자, 즉 매도자와 수취은행, 매수자와 채무은행 또는 수취은행과 채무은행 간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약정(BPO 그 자체와는 전혀 별개)이 필요하다. 그러한 금융약정의 조건은 제공되는 금융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BAFT, et al., 2016). ICC Guideline'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적전 금융은 물품의 제조과정과 그 포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도자에게 제공되며, 본 금융은 베이스라인 매치에 따라 지원되는 매도자의 한도 또는 신용한도(sellers limits/credit lines)를 근거로 하여 지원된다. 또한 베이스라인 매치에 따라 BPO를 근거로 그 BPO를 신뢰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 위험부담은 채무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ICC Guidelines, App).

BPO의 개설을 약정하고 있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그 BPO가 상환자원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선적전 금융거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의 담보를 제공한다. 단, 매도자가 그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매도자가 물품을 준비하여 선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 매도자는 성공적인 데이터 셋의 매칭을 위해 무역거래 데이터를 제출하면, 그 채무은행은 만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BPO는 구매 주문서를 근거로 한 선적전 금융을 장려하고 있다. 매도자와 수취은행 간의 금융약정은 본 금융을 위한 계약적 근거가 될 것이다(BAFT,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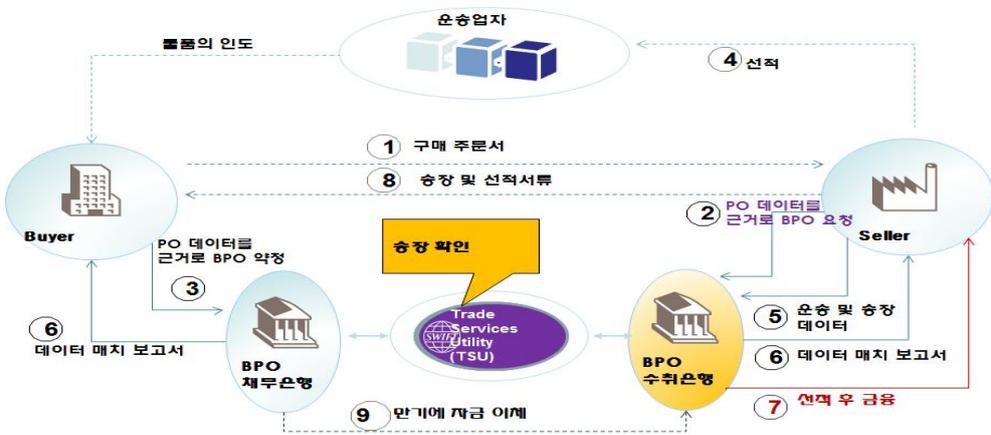
그리고 BPO 선적후 금융은 운전자본을 최적화하거나 또는 매출채권회전일수를 단축시키기 위해 매도자에게 제공된다. 본 금융은 거래 데이터 셋 매치로 지원되는 매도자의 한도 또는 신용한도를 기반으로 매도자에게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의 할인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거래 데이터 셋 매치로 지원되는 BPO를 근거로 한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거래 데이터 셋의 매치에 따라 BPO를 근거로 한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 금융위험은 채무은행이 부담한다(ICC Guidelines, Appendix).

무역거래 데이터의 성공적인 매칭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BPO 연지급 약정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선적후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본 금융은 매도자의 요청으로 수취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으로 매도자는 무역 데이터가 매치된 후에는 수취은행에 BPO 결제기간 동안 미결제된 연지급 약정의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매도자의 신용한도를 이용함이 없이 제공된다. 그러나 수취은행에서 채무은행의 신용한도를 근거로 배정된다. 따라서 매도자는 할인료를 차감한 BPO 금액을 조기에 수취할 수 있다. 매도자와 수취은행 간 금융약정은 본 금융을 위한 계약적 근거이다(BAFT, et al., 2016).

그리고 채무은행의 금융지원 요청에 따라 수취은행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역거래 데이터의 매칭이 성립되는 경우, 채무은행은 수취은행에게 BPO 금액을 매도자에게 선급하도록 지시한다. 금융은 수취은행에서 채무은행의 신용한도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따라서 매도자는 조기에 BPO 금액의 전액을 수취한다. 채무은행은 그 BPO 금액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취은행과 채무은행 간의 금융약정은 본 금융의 계약적 근거이다(BAFT,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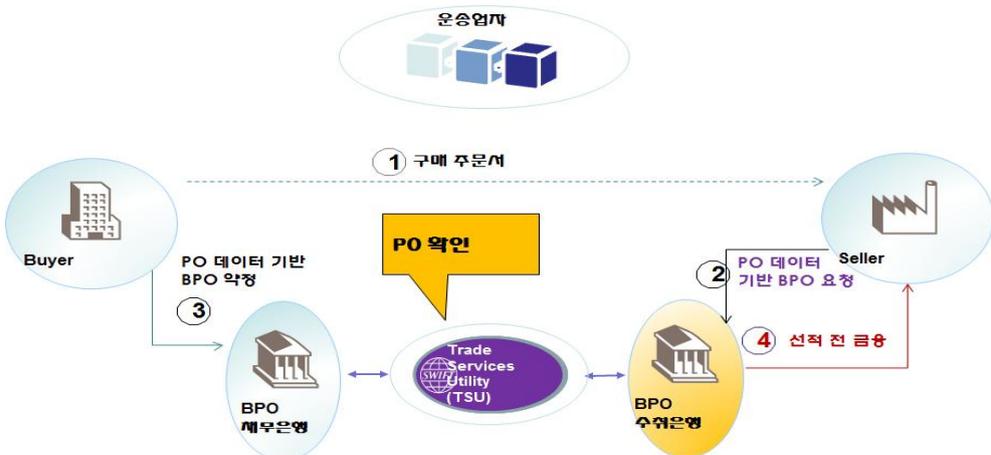
한편 매수자의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매수자에 필요한 운전자본을 지원하고 매입채권 일수(Days Payables Outstanding)를 연장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제공된다. 거래 데이터 셋이 매치되면 매도자는 일시불(일람불)로 수취하며, 매수자는 사전에 약정된 기간까지 연지급이 허용된다(ICC Guidelines, Appendix). 또한 매수자는 거래 데이터가 매칭된 후에 연지급 약정을 BPO에 근거하여 매도자에게 선급하도록 자신의 거래은행(채무은행)에 지

<그림 9> 선적전 금융 사례



자료 : ICC

<그림 10> 선적후 금융 사례



자료 : ICC

시할 수 있다. 그 채무은행은 연지급 기간 동안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수취은행에게 BPO 금액을 선지급한다. 따라서 매도자는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그 BPO에 추가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BAFT, et al., 2016).

2. BPO의 제도적 전망과 시사점

기존의 전자무역시스템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과 달리, BPO는 2013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적 환경에서 새로운 무역결제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금융과 지급약정은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를 위해 은행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 편리성과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전 세계의 모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흡한 점이 전자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은행을 통하여 전 세계의 금융망과 메시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SWIFT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BPO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고안되었으며, 또한 ICC는 URBPO를 제정함에 따라 그 정착을 위한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관심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BPO는 전자기반의 데이터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종이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성과 효용성을 높였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업무처리 미숙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제출된 종이서류를 자신의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또 은행의 지급확약과 상황에 따른 각종 무역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BPO의 발전과 그 효용성을 높인다.

다만 선하증권이 은행을 통하지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BPO는 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본 종이 선하증권은 그 은행에 직접 발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BPO 거래에서는 3부의 선하증권 중 1부가 수입자에게 직송되거나 또는 “신용장 거래에서 권리포기 B/L”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Harada, 2013). 그러나 이는 거래환경과 은행의 거래약관 등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BPO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매수자는 약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적기 제공받고 매도자는 그 대금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유용한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BPO는 추심방식, 오픈 어카운트, 국제팩토링 등의 비신용장방식의 이점과 편리성 및 전자적 시스템의 이용으로 인한 시간단축 및 오류 축소는 물론 정확성과 신속성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통적 신용

장, 지급보증 및 신용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기능의 보완을 통하여 무역금융제도의 효율성과 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PO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준비와 역할도 중요하다. 은행은 BPO 프로세스의 기반인 매칭시스템, 금융지원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는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

V. 결 론

SWIFT는 ICC와 협업하여 전자적 기반의 은행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BPO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은행은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으로써 BPO의 발전을 위해 ICC 및 SWIFT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BPO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채널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용될 수 있으며, SWIFT의 시스템은 참여 서비스업자의 솔루션 간 상호 작용성을 보장한다.

BPO는 SWIFT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고안된 기존의 오픈 어카운트 기반의 TSU 유틸리티 서비스에 은행의 지급약정을 추가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BPO는 그 이전 전자무역의 발전을 위해 출현한 다른 시스템에 비해 그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BPO는 전자적인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지급확약이 약정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용장방식과 유사하다. BPO는 지급약정, 모든 당사자를 위한 위험완화, 금융담보로의 이용 등 기능을 갖춘 무역결제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다. BPO는 증명된 최적의 기술 중립적인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에 기반하며(SWIFT, 2015). URBPO에 따라 운용된다.

그러나 BPO가 전 세계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은행의 많은 역할과 모든 관계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그 제도적 정착과 시행에 따른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BPO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지급약정을 적용함으로써, 그 제도적 관점에서 그 효율성의 개선과 신속성 및 편리성을 갖춘 대안으로 전통적인 무역결제시스템의 업무절차상의 불편성을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의 무역금융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송경숙·채훈(2016), “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 이봉수(2016), “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상진·김형철(2015), “URBPO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결제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 임재욱(2014),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and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 채진익(2014), 「전자무역론」, 청목출판사.
- _____(2011),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49권, pp. 402-423.
- _____(2013a),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170.
- _____(2013b),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pp.121-122.
- _____(2015), “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5권, pp. 119-135.
- 한낙현·김영곤,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 Casteman, A.(2013), “The futur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DCInsight*, Vol. 19 No. 3, p.3.
- _____(2015), “Digitisation of Trade flows; The Bank Payment Obligation, a new open account payment method”, SWIFT, p.16.
- Harada, T.(2013), “A Perspective of Trade Finance by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Workshop on Trade Finance Lombok, Indonesia, Bank of Tokyo-Mitsubishi UFJ, p.5.
- Hennah, D.(2012),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 18 No 2.
- Goparaju, M., Meyer, M. K and Chiu, C.(2013), “Five specialists analyze the new BPO rules”, *DCInsight*, Vol 19 No 2, p.11.

- BAFT, EBA, FCI, ICC and ITFA(2016), “Standard Definitions for Techniques of Supply Chain Finance”, *Global SCF Finance Forum*, p.63.
- ICC(2013a),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lication No. 750E, p.8.
- ICC(2013b),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lication No. 751E, pp.27–28.
- ICC(2015),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 ICC BPO Education Group(2016), “Bank Payment Obligation” Business Briefing, ICC Banking Commission Meeting Mexico City, pp. 13–60.
- INNOPAY(2015), “B2B Payments, Supply Chain Finance & E-invoicing Market Guide 2015” Supply Chain Finance Community, p.24.
- Marchal, R.(2010),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 16 No 1, p.22.
- Madhavan, Vinod(2013), “BPO – a Step toward electronification in SCF”, *DCInsight*, Vol 19 No 2, p.11.
- SWIFT(2015), “Market adoption of BPO”, p.39.
- SWIFT(2016), “Digital Trade and Trade Financing”, SWIFT & OPUS Advisory Services International Inc., p.5.
- Susmus, T. and S. Ozgur Baslangic(2015), “The New Payment Term BPO and Its Effects on Turkish International Business”, *Procedia, ScienceDirect*, p.324.
- T. O. Lee Consultants Ltd.(2011),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Bank Payment Obligation(BPO)”, p.4.
- <https://www.swift.com/our-solutions/corporates>(2016/9/26)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of a BPO

Jin-Ik Chae

• 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 and trade finance settlement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The BPO is a payment method based on trade data-matching which can be used for risk mitigation and payment. The BPO offers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such as an automated solution, an assurance of payment, an improved overall efficiency of business, risk mitigation for all parties, trade financing, etc.

The BPO will be developed as a new trade payment method that meets the periodic paradigm thanks to many benefits and usefulness. The BPO will greatly improve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trade payment system in that it is operated by a technology-enabled, databased mechanism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trade transactions.

So, the BPO is expected to evolve into an alternative instrument of the trade payment system. This paper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focusing on papers, websites of ICC and SWIF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laws and so on.

<Key Words> BPO, Trade Payment System, E-Trade